

년 월 일

시민세·부민세·삼림환경세 납세관리인 신고(승인신청)서

(수신처) 히가시오사카 시장

납세자 주소 또는 소재지

성명 또는 명칭

지방세법 제300조 및 히가시오사카시 세금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세관리인을 정했(변경)으므로 신고(승인신청)합니다.

1 새로 정한 납세관리인

〒

주소 또는 소재지

성명 또는 명칭

전화번호

2 폐지하는 납세관리인

〒

주소 또는 소재지

성명 또는 명칭

전화번호

※변경하는 경우는 구 관리인을 2에 신 관리인을 1에 기입하고, 폐지하는 경우는 2에 기입해 주십시오

3 납세관리인을 정한(변경·폐지) 이유

- 1 출국
- 2 시외전출
- 3 귀국
- 4 그 외(구체적인 이유))

4 그 외 참고 사항

(1) 출국(예정) 연월일 년 월 일

(2) 귀국(예정) 연월일 년 월 일

(3) 신주소·거소지

근거법령 지방세법 제300조 히가시오사카시 세금 조례 제9조

문의·제출처

〒577-8521 히가시오사카시 아라모토키타 1-1-1 히가시오사카시 세무부 시민세과

전화 06-4309-3135

팩스 06-4309-3809

납세관리인이란

그 해 1 월 1 일 현재, 히가시오사카시에 주소를 가지며 이후 시외 또는 국외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. 단, 히가시오사카 시장이 지정 불필요라고 하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은 필요 없습니다. 전출 시 납부 편의상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.

【주의사항】

- 원칙적으로 본인 신청에 의해 송부처 등을 설정합니다. (전화 신청은 본인 확인이 어려우므로 접수하지 않습니다.)
- 반드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본 및 납세관리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주십시오.
<본인 확인 서류의 예>
마이넘버카드 · 자동차운전면허증 · 여권 · 자격확인서 · 연금수첩 등
- 예외로 대리인(친족, 성년 후견인 등)의 신청도 일부 접수합니다.
- 본 신청으로 납세관리인 설정 내용 통지는 생략합니다.
- 납세관리인 변경 및 삭제의 경우도 본 신청서로 다시 신청해 주십시오.